

2023년 정기주주총회확인사항

2023년 02월

자료에 대한 권리는 저자에게 있으며, 복사나 인용은 허락이 필요합니다.

• 법무사 신천수

Q. 강의내용 및 사용방법

- 정기주주총회시 의뢰인들의 주요 질문사항
- 정기주주총회시 확인이 필요한 주요사항, 진행절차
- 자기주식, 무상증자, 주식소각
- 2023년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
- (의사록 및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제공)

Q.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안건

[보고안건]

- ✓ (영업, 감사, 기타 경영현안_이사회처리안건등)

[결의안건]

- ✓ 2022년 결산재무제표승인의 건
- ✓ 배당승인의 건(현금배당 / 주식배당)
- ✓ 이사선임의 건 / 감사선임의 건
- ✓ 임원보수한도승인의 건
- ✓ 스톡옵션부여의 건
- ✓ 자기주식처분(관리)의 건

Q. 3월 31일까지 정기주총을 해야 하나요

- 정기주총은 3/31일까지 해야 하나요(이유,근거)?
 - ✓ (상법 제365조, 법인세법 제60조)
- 정기주주총회가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?
 - ✓ (상법 제635조 1항 22')
- 3/31일 이후 주총이 진행되는 경우 계속회등 이용 필요성
 - ✓ (상법 제372조)(재무제표승인건X, 기타 안건은 처리)
- 정기주총기준일(주주명부확정)
 - ✓ (정관표기)

Q. 주주총회소집통지서(서면,전자문서) 기재사항

- 장소 : (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_상법제364조)
- 회의의 목적(의안)사항 : (상법 제363조 2항)
- 통지서 기재례

주주총회소집통지서

1. 주주총회 일시 : 2023. 3. 31. 오전 10시 00분
2. 소집장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본점회의실
3. 회의안건 : (1) 2022년 결산재무제표승인의 건
(2) 정관일부 변경의 건(신구대비표 첨부○)
(3) 이사선임의 건(사내이사 김길동?) (4)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Q. 주총소집통지방법(기간단축방법)

-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
 - ✓ (상법 제363조 1항)
- 공고하는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나요? 1주 소유주주에게도 통지?
 - ✓ (상법 제542조의4, 시행령 제31조)
- 통지를 했는데 주주가 수령을 못하는 경우
 - ✓ (상법 제363조 1항, 3년간 계속X)
- 통지기간 계산방법(3.31. 주총시) → [3.?.]까지 통지
- 주주전원의 동의(상법 제363조 4항) / 주주전원출석

Q. 주총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3월 31일 오전 10시 00분
2. 장 소 : 본점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
(보고사항)

영업보고,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, 외부감사인선임보고

(부의안건)

- 제1호 의안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
- 제3호 의안 회사 현황 및 사업계획 설명

2023년 3월 15일

주식회사 ***
대표이사 *** (법인)

----- (절취선) -----

위 임 장

- 위임주식소 : 주식회사 ***의 기명식보통주식 []주
- 대리인 :

위 주식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2023년 3월 31일 귀사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임합니다.

2023년 3월 일

- 주주의 성명 : (인)
- 생년월일 :

연락처 :

Q. 서면결의(서면투표)

주식회사 **** 귀중

- ◆ 일 시 : 2023년 3월 31일 오전 10시 00분
- ◆ 장 소 : 본점회의실
- ◆ 의결권 행사 주주에 관한 사항

주주명			주민번호		
주소					
보유 주식소	보통주	주	의결권 행사 주식소	주	
	우선주	주			

본인은 주식회사 **** 정기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**** 정관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주주 (인)

- 아 래 -

*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안 건	찬성	반대	기권
1호의안	2022년 결산재무제표승인의 건			
2호의안	주식의 포괄적 교환승인의 건			
3호의안	정관승인의 건			

- 1호의안에 대해서는 첨부한 2022년 결산재무제표참조
- 2호의안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첨부된 교환내용
- 3호의안에 대해서는 통지서에 첨부된 정관개정내용

● (회사에 위임하는) 의결권행사 위임장이나 (직접 의결권을 표시하는) 서면투표용지는 우편 또는 이메일(****@e****로 2023년 3월 3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Q. 출석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하는 방법

- 서면투표? / 서면투표가 강제되는지?
 - ✓ (상법 제368조의3)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서면결의 / 서면결의를 이용하는 경우 준비서류
 - ✓ (상법 제368조의3 / 제363조 4항 자본금 10억원미만)
- 대리인 출석 및 제한 / 대리인이 지참해야 하는 서류
 - ✓ (상법 제368조 2항)
- 전자투표? / 전자투표 이용이 필요한 경우
 - ✓ (상법 제368조의4, 제409조 3항 -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)

Q. 자기주식/종류주식이 있는 회사의 경우 주의사항

- 의결권행사, 배당시 자기주식의 지위
 - ✓ (의결권X, 배당을 받을 권리X)
- 자기주식의 관리필요성(취득시 보유 또는 양도목적 / 보유기한)
 - ✓ (보유기한제한 없음)
-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 경우 주식배당방법
 - ✓ (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)
- 주식배당시 현금배당이 수반되어야 gk는지 여부

Q. 의사록작성시 주의사항

- 의사록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?(효력발생?)
✓
- 의사록상 기명날인은 누가? 인감도장 날인필요?
✓
- 의사록은 공증(인증)이 필요한가요?
✓
- 의사록 보관방법(확정일자등)
✓

Q. 보수한도승인은 매년 해야 하나요?

-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(상법 제388조_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총결의)
 - ✓ (보수규정에 대한 상법과 관련 세법등의 차이)
- 보수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
 - ✓ (확인의 의미)
- 보수규정이 없는 경우
 - ✓ (승인하고 다음 해에 준용가능)
- 과도한 보수지급을 결정하는 경우
 - ✓ (합리적 비례관계,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등 고려 - 2014다11888)

Q. 의안 결정시 정족수계산

- 의결권행사가 문제되는 경우
 - ✓ 가압류 / 양도담보 / 주주명부상에 기재가 없는 주식
 - ✓ 가부동수인 경우
 - ✓ 전원출석총회
 - ✓ 무의결권주식 / 자기주식
- 정기주총출석가능주식?(02.28.현재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주)
 - ✓ (보통주식 70주, 무의결권주식 10, 자기주식 10주, 1월 증자주식 10) → []
- 보통결의(100주 발행회사에 이사선임건에 30주 출석시)
 - ✓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→ []

Q. 주주총회의사록

제 호의 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의장은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하여 2022년 이사의 보수한도의 내용과 그 지급내역을 설명하였다. 이어 2023년 이사의 보수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줄 것을 물은 바, 출석한 주주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후 승인가결하다.

-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총액 금 []원정 |

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. (회의 종료시간 : 오전 11시 00분)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, 출석한 대표이사 및 이사가 기명날인 하다

2023년 3월 31일

주식회사 &&&&&

의장 및 대표이사 *** (법인)

사내이사 @@@ (개인)

사내이사 ###노창래 (개인)

Q. 주주총회결의의 하자

소의 종류	소의 원인	기 간
결의취소의 소 (제37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•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배한 때 	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
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(제380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•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 	기간제한 없음
부당결의 취소의 소 (제381조)	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	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

Q. 누구를 위한 제341조인가?(2)

- 정관개정의 필요성 -제341조의 상법규정의 개정필요?
- 주주명부(취득전후 주주명부) 확인
 - ✓ 주권의 발행의 필요성(소득세법 집행기준 98-162-20)
- 판례 등 견해
 - ✓ 원칙적 취득허용 / 처분기한(2012두27091)
 - ✓ 가지급금X(우회적으로 자금지원목적이 없다면)(서면법규과-168 2014.2.25)
 - ✓ 균등취득 / 잉여금의 의미(서울고등 2017누35631 → 대법2017두63337)
- 자기주식의 취득목적(보유등 vs. 소각)
- 취득 소요기간 - 약 45~60일
- 자기주식취득에 따라 과점주주발생(2010두8669)? /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
-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관리방법(정기주총, 이사회 + 확정일자)

Q. 무상증자? 정확히 말해주세요!!

- 어느 시기에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인가요? → 정기 / 중간 / 준비금자본전입
- 중간배당의 방법으로 주식교부가능?
- 배당의 재원은 무엇인가요? → 증빙서류
- 여러가지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어요(→ 같은 종류주식 교부)?
- 배당소득세는 검토는?

Q. 정확히 말해주세요!! 주식소각

- 소각의 대상
 - ✓ (341조, 341조의2) / 상환주식 / 보통주식
- 보통주식의 소각방법
 - ✓ 주식소각(병합) / 임의소각 / 유상소각(소각대금) : (1개월공고기간)
- 자기주식소각(제343조 1항 단서)과 상환주식상환(제345조)
 - ✓ 이익잉여금의 존재여부 : (즉시. 2주)
 - ✓ 상업등기규칙 제141조
- 결손금보전목적의 자본금감소(제439조 2항)
 - ✓ 자본금과 결손금을 동시에 감소하는 방법 : (1개월공고기간)
- 주식수소각(자본금감소)와 의제배당

Q. 저희는 상장회사가 아닌데요?

- 외부감사
 - ✓ 외부감사법 제4조 / 외부감사법시행령 제5조
- 공시제도
 - ✓ 발행공시(자본시장법 제119조)
 - ✓ 사업보고서등(자본시장법 제159조 : 외부감사적용기업+500이상 주주)
- 감사위원회 / 상근감사
 - ✓ 비상장(주총 → 이사회) / 상장회사(주총)
 - ✓ 상근감사는 1천억이상(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)
- 준법감시인(상법시행령 39조 /자산총액 5천억 /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- 내부조직, 사전적 감시기관, 감사의 감사대상)

Q. (2023년쟁점) 합병 / 분할 / 조직변경

● 경기하락기에 증가하는 합병

- ✓ 적격합병 / 순자산가액이 (-)인 경우 합병 / 무증자합병
- ✓ 기본소요기간 약 50일

● 경기상승기에 증가하는 분할

- ✓ 적격분할(5년이상 사업영위, 독립된 사업부분, 부동산부분X, 기타)
- ✓ 인적분할, 물적분할(자본이 감소하지 않는 연대책임 분할의 경우 단축가능)

● 외부감사와 조직변경(유한회사 ↔ 주식회사 ↔ 유한책임회사)

- ✓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○ / 사업자등록증 변경 X
- ✓ 법인등기, 부동산등기이전비용 - 정액등록세

Q. (2023년쟁점) '무책임'한 조특법 제31조, 제32조

- 조특법 제32조(현물출자) → 주식회사(인가) / 유한회사(인가X)
- 조특법 제32조(포괄양수도) → 설립후 개인사업자양수(인가X)
- 조특법 제31조(중소기업간통합)
- 지특법 제57조의2(취득세 감면등)
 - ✓ (감면후 취득세 중과지역 3.5% / 지방 1.75%)

Q. (2023년쟁점) 농업회사법인 / 영농조합법인

- 조합원, 주주인 농업인(농업인확인서 → 농어업경영체등록)
- 농업회사법인(→ 농어업경영체등록 / 취득하는 부동산)
- 신고필증(설립/변경)을 수령한 후(2022.08) → 등기
- 의결권(농업회사법인은 출자수 / 영농조합은 1인 1의결권)→민법(조합)
- 정관정비필요
- 해산명령
- 설립 / 조직변경시 → 농업인 100%요구?

Q. (2023년쟁점) 사내근로복지기금 / 우리사주조합

● 사내근로복지기금

- ✓ 근로자측 + 사측 / 사업계획서 + 수지예산서
- ✓ 정관 + 의사록 → (인가) → (법인등기부등본)
- ✓ 근로자복지(임금과 세금)

● 우리사주조합

- ✓ 등록 / 고유번호증 / 한국증권금융
- ✓ 우선배정 / 우리사주매수선택

배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

- 국민대학교법과대학졸업
- 제6회 법무사시험합격(2000년)
- (전) 서울법학원, 폴라리스법학원 상법, 비송절차법 강사
- (전) 한국표준협회 강사(기업법실무)
- (전) 한국생산성본부 강사(기업법실무)
- (전)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
- (전) 그레이프시드코리아(주) 인사/법무팀장
- (전) (코스닥) 제이엠아이(주) 감사위원(사외이사)
- (전)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
- (전) 대한법무사회 법제사법자문위원
- (현) 법무사 신천수, 심민정, 오영백사무소 대표(서초동)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-16 성보빌딩 401호
[전화:010.3241.2306, 이메일:scs2306@hanmail.net]